

광주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1나58881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1나58881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5. 20 선고 2020가단5765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22. 7. 14.

판결선고 2022. 8. 25.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5. 20. 선고 2020가단5765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단독재판부에 환송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C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2017. 5. 31. 체결된 상속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와 2017. 8. 21. 접수 제3308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2022. 6.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1/5 지분’은 2020. 10.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에 비추어 ‘1/6 지분’의 오키로 보인다).

이 유

이 사건 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하여 본다.1)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법률행위가 있는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이는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해야 한다. 어느 시점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정하여야 하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다265808 판결 참조).

원고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C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원고가 C에게 2012. 8. 25.부터 2013. 6. 25.까지 합계 9,500,000원을 송금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C가 원고에게 위 대여금과 그에 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 8. 27. 선고 2020가소153 판결), C의 부친 D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4. 1. 16. 사망하였는데 D의 상속인은 피고와 C를 포함하여 6명의 자녀들인 사실, 위 상속인들은 2017. 5. 3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실, 이에 따라 2017. 8. 2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D의 사망일인 2014. 1. 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20. 9. 29. 피고와 C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이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사해행위취소의 소인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각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로서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취소를 구하는 대상 법률행위인 상속재산분할협이가 있는 날은 D의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2017. 5. 31.로 봄이 타당하고,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로 기재된 ‘2014. 1. 16.’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등기원인 일자를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기재한다는 등기예규(제438호)에 따라 이루어졌을 뿐인 것으로 보인다.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취소를 구하는 법률행위를 “2014. 1. 16. 체결된 상속협의분할 약정”으로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등기부상 “2014. 1. 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위 기재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고,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상속협의분할의 취소와 함께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와 2017. 8. 21. 접수 제33084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청구를 하였던 사정, 소장의 청구원인에도 “피고가 2017. 8. 2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그 원인된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하고 원상회복을 구하고자 청구취지 기재의 소제기에 이르렀다”고 기재한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취소를 구하는 대상은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인 상속재산분할협이의임이 명백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해행위 취소의 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고,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은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증명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거나 쟁점으로 될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인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석명을 구하고 증명을 촉구하여야 하고, 만일 당사자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 관점을 이유로 법원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는 경우에는 그 법률적 관점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와 같이 하지 않고 예상외의 재판으로 당사자 일방에게 불이익의 타격을 가하는 것은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00914, 20092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피고가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대상이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인 상속재산분할협의이고, 그 시기인 2017. 5. 31.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며, 소장에 기재된 취소 대상 법률행위의 일자가 등기부상 등기원인 일자에 따라 잘못 기재된 것으로서 원고의 부주의 또는 오해에 기하여 간과한 것이 명백한 이상 이 사건 소가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하는 법률행위가 있는 날부터 제척기간 5년이 지난 후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를 각하할 것이 아니다. 원고도 이 법원에서 취소 대상을 “2014. 1. 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기재한 것은 피고가 제출한 을 제4호증 기재 상속재산분할협이가 2017. 5. 31.에 있었던 점을 간과한 채 단지 등기부상 등기원인 일자를 주장한 원고의 사실 오해에 기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소는 상속재산분할협이가 있는 날인 2017. 5. 31.로부터 5년 내인 2020. 9. 29. 제기된 것으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제418조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단독재판부에 환송하기로 하여2)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만, 판사 유상호, 판사 송인경

별지

1) 제1심은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 사건은 피고가 사해행위 여부 및 피고의 사해의사 여부에 관하여 다투는 사건으로서 그에 관한 추가심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이 법원에서 본안판결을 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에 관한 석명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에서 본안판결을 받을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